

제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1108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5.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소7855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28,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같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하였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판매사원인 C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6. C을 통해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벤츠 C200 아방가르드 차량을 기본 차량가격 55,7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특약사항 '선납 50%, 무이자 조건, 2년간 신차보상보험 적용' 등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자동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입금 계좌로 예금주가 피고인 계좌 번호(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가 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금액 52,415,000원(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차량가격 55,700,000원에서 3,285,000원이 할인된 금액), 실판매금 기준 50% 선수금 26,207,500원, 할부원금 52,415,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실납입 할부금 436,790원(= 월 할부금 1,043,630원 - 지원금 606,840원) 등이 기재된 내역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7.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9,534,200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다음 날 C에게 위 29,534,200원을 모두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기초사실

원고는 C을 통하여 대금이 52,415,000원이나 그 50%인 선납금 26,207,500원과 등록비 등으로 30,534,2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무이자 60개월 할부로 매월 436,7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4. 7. 위 30,534,200원 중 나머지 29,534,200원을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C이 2017. 4. 13. 원고에게 5,483,000원을 입금하면서 원고의 돈 3,000,000원을 보태 자동차 판매회사로 직접 입금하라고 하여, 원고는 2017. 4. 13. E F 계좌로 8,483,000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차량 대금 및 취득등록세 등 명목으로 33,534,2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는 실제 E와 선수금을 10,483,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차량 대금은 할부 원금 41,932,000원에 할부 이자 연 7.23%로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원고 주장 할부약정'이라 한다)을 원고 몰래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C과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차량 대금 선수금 중 18,724,500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원고 주장 할부약정에 의해 8,162,6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합계 26,887,100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C과 피고는 위 이자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16,158,74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는데, 원고는 나머지 10,728,356원(= 26,887,100원 - 16,158,744원)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차량 대금 중 선수금 등으로 총 33,534,200원을 지급하였는데, C과 피고는 원고 모르게 E와 10,483,000원을 선수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금액 18,724,5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편취하여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선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33,534,200원을 편취하는 데 피고가 C과 공모하거나 C을 돕는 등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20회 이상 선수금 명목의 돈으로 합계 412,823,500원을 입금 받아 그 대부분을 C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C이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결국 원고는 원고가 편취당한 선수금 중 일부 금액 18,724,500원과 원고 주장 할부약정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8,162,600원의 이자 등 총 26,887,100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887,100원에서 피고와 C이 위 이자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반환한 16,158,74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72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원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C과 피고는, E에서 할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할인받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대금은 52,415,000원이나 선납금 26,207,500원 및 등록비 등으로 30,534,2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되 E에서 할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이자로 50개월 동안 월 436,790원만 부담하면 되고 차량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를 속이기 위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계약서상에 이 사건 피고 계좌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원고를 안심시켰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차량 대금 및 등록비용 등으로 30,534,200원을 입금하였는데, C과 피고는 결국 그 중 18,724,500원을 E에 입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그리고 C과 피고는 원고 모르게 E와 원고 주장 할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8,162,6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30,534,200원 중 편취당한 18,724,500원과 위 추가 부담 이자 8,162,600원의 합계 26,887,1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C과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공모하거나 적어도 C의 불법행위에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26,887,100원에서 C이 할부지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16,158,74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72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피고 계좌로 29,534,200원을 입금한 다음 날 피고는 그 전액을 C에게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나 원고 주장 할부약정 체결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C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할인받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385,844,5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형사 고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19년 형제25734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2019. 12. 5.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이체 받은 금액 그대로 C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7호증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C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항의 ①, ②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C과 공모 내지 C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C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

1) 원고가 구하는 위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성질상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으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